

파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

□ 제anyi유

2001. 7. 24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2001. 11. 22일자 동 시
행령이 개정되어 시·도지사에게 이양된 업무를 시장·군수·구
청장에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
유지,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

□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(안 제4조)

- 높이 4미터이상의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-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
인 도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-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신규 표시허가
에 관한 사항
-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신규
표시허가 관한 사항

나.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(안 제8조)

-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 벽보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등을
위하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
- 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
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

다.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(안 제14조)

라.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(안 제15조)

□ 검토내용

< 법적 타당성 >

동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1. 7. 24
과 11. 22일자로 각각 개정되면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위임된 사
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안으로 위임된 범위안에서 규정
하고 있고 경기도의 준칙안을 수용하여 법적 타당성에 별다른 문제
점이 없다고 사료됨.

< 내용 및 구조 >

- 조례안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심의위원회
의 위원의 위촉 대상만을 정하였을 뿐 위원장의 자격, 위원의 수를
정하지 않았고

[시행령 제33조(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구성 등)]

①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
행 지방자치 단체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(담당국장이 없는
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이 되고 부위원장
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.

- 제정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광고물관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토
록 하면서

[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및 제6항]

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
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
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
수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담당과장의 민간 전문가를
배제한 전횡이 우려되어 공무원의 수를 반수미만이나 같은과 소
관의 민간을 포함한 합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의 구성과 형평에
맞게 3분의1 범위내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[도시계획위원회 설치·운영 등 조례]

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·교통·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동 제정 조례안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부칙 제3조에서 기존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음
- 안 제13조 관련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·신고 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,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
 - 안) 제14조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
 - 안) 제15조 제1항관련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경기도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여하 시·군과 동일 유사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